

남양주시 U-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19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9. 3. 9.  
제 출 자 : 자치행정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2. 27. (남양주시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9. 3. 2.
- 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65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(2009. 3. 9.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복지문화국장)

가. 개정이유

-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(대표협의체)는 실무협의체로 하여금 다른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등의 심의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, 대상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체계를 보완하고
- 그 밖에 조문의 정렬, 자구의 수정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 대행기능 규정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

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추가하고, 실무협의체로 하여금 다른 위원회 등의 심의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(안 제2조).

○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원 상한을 “20인”에서 “30인”으로 상향 조정하고 각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협의체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며,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두어 다른 규정에 의한 위원회 등의 심의기능을 대행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3조).

○ 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(안 제8조).

- 정기회의 : 대표협의체 4회, 실무협의체 6회
- 임시회의 : 필요시(소위원회 : 안건 상정 시)
- 개의·의결 :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(소위원회 : 3분의 2 이상), 출석의원 과반수 의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 - 회의록 참고

4. 심사중 논의된 사항 : 별다른 의견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. 끝